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75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강동길 의원 (찬성자 15명)
- 나. 제안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동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조사 실행을 현실화하고자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함.

나. 주요내용

-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현실화하여 3년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3항).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구체화 함(안 제1조~제3조, 제6조~제9조).
-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 관련 조항 신설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19.8.19. ~ 8.26.)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내용 중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강화 및 확대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한 것임.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안」으로 제출되었음.

- 본 조례는 2012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지원 부족 실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본 조례는 종합계획, 지원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파악 조차도 어려운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찾아오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한계 등이 있었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상담, 학업, 진로, 취업, 자립,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문형식에 맞춰 현행 14개 조항을 16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의(안 제2조), 종합지원계획 중 사업(안 제4조), 상담지원(안 제6조), 학업·진로 지원(안 제7조), 직업체험·취업지원(안 제8조), 자립지원(안 제9조) 등 8개 조항 및 내용을 신설하고,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항(안 제5조, 현행 제7조, 현행 제8조) 등 3개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며, 지원계획(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4조), 지원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학교 밖 지원센터의 역할(안 제11조) 등을 수정하고,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공공시설 이용권(안 제15조), 시행규칙(안 제 16조) 등 4개 조항은 내용을 유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현행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수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수정 및 신설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유지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수정 및 신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수정 및 삭제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 삭제	신설	제6조(상담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삭제 후 신설	제7조(학업지원)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삭제 후 신설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이동 후 신설	제9조(자립지원)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수정 및 신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수정 및 삭제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유지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유지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신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
	이동	제15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4조(시행규칙)	유지	제16조(시행규칙)

- 안 제1조는 현행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대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음.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u>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u>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u>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 이는 대안교육만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준용하고, 세세한 정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조문의 간명화를 위해 「학교밖청소년법」제2조 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신 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p>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노동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p>	<p>목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p>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p> <p>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p> <p>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p>
<p>3. “대안교육기관”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p>	<p>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p>

-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계획명을 변경(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인식개선, 지원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의 계획과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그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학교밖청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1)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도 본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위법과 전부개정조례안의 지원계획의 내용 비교 〉

「학교밖청소년법」	본 전부개정조례안
<p>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생략)</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4조제3항의 실태조사는 현행 매년 시행하던 것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대부분 표본을 통해 특정사항(학교를 나온 원인, 경로, 현재상태 등)에 대해서만 조사함에 따라, 매년 조사결과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며, 상위법상의 실태조사 주기와 맞추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년으로 조사주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 실태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중복적 실태조사를 피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의 지원위원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과 서울시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도록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상담(안 제6조, 심리, 진로, 가족 등), 학업지원(안 제7조, 검정고시, 재취학, 재입학, 자격취득, 진로탐색 지원 등),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안 제8조), 자립지원(안 제9조, 생활, 문화, 의료, 정서, 경제, 법률 등) 등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6조는 제정시(2012.7.30.)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원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 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제5조제3항)이 신설(2013.10.4.)됨에 따라 조번호만 남고, 조의 내용은 삭제된 상태였음.

- 본 조례가 제정(2012년)된 후 본 조례를 모델로 법령이 제정(2014년)되었고, 본 조례의 제정당시에는 상위법이 없어,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할 수 없어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제정당시 담을 수 없었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지원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 안 의 요 지

가. 수정이유

-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일부 입법기술적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내용과 의결 주문이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안 제10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75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일부 입법기술적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내용과 의결 주문이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안 제10조).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안 제10조의 제목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신 · 구 조문대비표 〉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u>제10조 ①</u>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 <u>“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u></p> <p><u>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u>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

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제6조의2에 의한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상담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학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립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3.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각급학교
5.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6. 지방노동청 및 시청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9. 보호관찰소

10.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견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 ① 시장은 각 자치구에 설치된 지원센터(이하 "자치구 지원센터"라 한다)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